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11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090호)	이원택의원	2024.6.3.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 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028호)	윤준병의원	2024.6.27.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 산 식 품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2024.8.27.) 상정

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4.8.27.)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 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 나.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 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을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를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② (생 략)	및 종류)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	③
업·농촌의 <u>공익기능 증진과 농</u>	<u>공익기능 증</u>
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畜循環) 촉진 등을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① ~ ③ (생 략)	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
	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
	이 소집할 수 있다.
<u>④</u> 제1항에서 <u>제3항</u> 까지의 규	<u>⑤</u> <u>제4항</u>
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 ⑤ <u>제2항부터</u>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
청 등) ①
<u>수립·시행하여야 하</u>
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
<u>터</u>